

[별표 9] <개정 2006.2.24>

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 건축물의 범위(제40조제1항관련)

구 분	대 상	범 위
1. 공장용 건축물	가. 읍·면지역 나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의 한 산업단지 다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의한 유치지역	가. 공장 나. 부속시설로서의 창 고·사무실 다. 종업원용 기숙사
2. 교육용 건축물	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	가. 교사 나. 사무실 및 부속시설 다. 학생용기숙사
3. 종교용 건축물	가. 교 회 나. 사 찰 다. 그 밖의 종교용 건축물	가. 당해 종교용 건축물 나. 부속시설로서의 집 회소·사무실·관리사 무실 다. 85㎡ 이하의 소속 직원용 숙소, 신도용 기숙사
4. 자선용 건축물	가.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의 업무용 건축물 나. 개인 또는 법인이 자선용으로 출연하는 건축물	가. 당해 자선용 건축물 나. 관리사무실 등의 부 속시설
5. 공익용 건축물	일반대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기념관·전시관· 도서관·동물원·식물원·집회소·공회당·대피시 설·체육시설(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가맹단 체가 건축하는 체육시설과 「주택법」의 규 정에 의한 복리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 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)	가. 당해 공익용 건축물 나. 관리사무실 등의 부 속시설
6. 축산용 건축물	「축산법」의 적용을 받는 축산업을 영위하 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	가. 당해 축산용 건축물 나. 부속시설
7. 농업용 건축물	「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농업인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	가. 당해 농업용 건축물 나. 부속시설